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11월 24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월 24일(화) 오전 9시 30분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1. 23.(월)	담당부서	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제정TF
담당과장	이재석 팀장(044-203-5895)	담 당 자	조동후 사무관(044-203-5894)

「포항지진피해구제법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
-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함께 부담 -
-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재심의 절차,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「**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**」 **일부개정 법률안**이 11월 24일(화) **국무회의**에서 **의결**되어, 11월중에 **국회**에 **제출**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□ **포항지진피해구제법**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통해 **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**을 도모하기 위해 '19년 12월 31일 제정·공포되었으며,

○ 동 법에 따라서 **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·접수**가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.

□ 금번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, **정부와 경상북도·포항시**가 **실질적 피해구제**와 **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**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며,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※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 수립시, 정부-관계 지자체 협의 사항 ('20.8.25 관련 보도자료 배포)

① 피해자에게 **피해금액의 100%**를 지원, 이를 위해 **국비 80%, 지방비 20%** 부담
② **지자체의 지원금 부담, 재심의 근거,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** 위한 **법개정 추진**

❶ **(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 주체)**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**국가**와 **관계 지자체**가 **지원금 재원**을 함께 **부담**하도록 근거를 마련함

○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은 **국가와 관계 지자체**가 **부담**하고, 재원 부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함

*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원 부담비율(국가 80%, 지자체 20%)을 명시할 계획

❷ **(재심의 절차 도입)** 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**재심의 규정이 없어**,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,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**행정심판·소송** 등을 곧바로 청구해야 하는 **부담**이 있으므로, 신청인의 **이의 제기권 보장**을 위해 재심의 절차를 도입함

○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 있으면 **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**에 재심의 신청 가능, 재심의 결정 기간은 **2개월 이내**(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)

❸ **(소멸시효 특례)** 포항지진 발생('17.11.15) 후 **장기간이 경과**한 점을 감안하여, 국가 및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**기간이 경과(소멸시효 완성)**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**소멸시효에 관한 특례**를 마련함

○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자 등이 **손해·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→ 5년으로 연장함**

*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: 손해·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(민법 제766조제1항)

○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**피해구제 신청** (재심의 신청 포함)**이 있는 경우 진행되지 않음(신청일~결정통지 받은 날)**

□ 산업부 관계자는 "법률 개정이 완료되면, **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%를 지급**하게 되어,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"고 밝혔다.

□ 산업부는 차질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**조속하게 법률이 개정**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법률 개정 이후 즉시 **시행령 개정***에도 **착수**할 계획이다.

* 시행령 주요 내용 : ① 국가 및 관계 지자체의 지원금 재원 부담비율,
②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(신청 절차, 양식 등) 규정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TF 조동후 사무관(☎ 044-203-58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) (생 략)	제14조(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<신 설>	제16조의2(재심의)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신 설>	제34조의2(소멸시효에 관한 특례) ①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「민법」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②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. 1.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2.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